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10/29 통권 175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이사총실의무 확대가 비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 소득 계산시 상속세 과세된 기재금액은 원가로 차감함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일반원칙	모든재산	시기(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시기 등)
주식	상장주식	기준일 전후 2개월(합 4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의 평균
	비상장주식	주당순자산가치(40%)와 순손익가치(60%)의 가중평균액 ① 주당순자산가치 = 자기 자본(=총자산-총부채)÷발행주식 수 ② 주당수익가치 = (3년전 이익×1 + 2년전 이익×2 + 1년전 이익×3)÷6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급등지역, 매출방법
	주택	개별주택가격 고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시가격, 유사거래가
	건물	국세청장 산정·고시가격,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
채권	상장채권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격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격 - ①·②중 큰 금액으로 함
	비상장채권	- 타인으로부터의 매입: 매입가액 + 미수이자 -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 매입: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액
기타	펀드	거래소 기준가격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담보설정재산	① 보충적 평가액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①·②중 큰 금액으로 함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51호 / 주간 44호

2025. 10. 29.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표지
CEO의 경영산책	이사총실의무 확대가 비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보유세 개편 핵심 사항 - 한눈에 보는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체계	8 9
직장인 Survival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정리의 힘'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사전법규소득-95, 2025.04.21)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재산 많으면 세금 많이" 정부, 보유세 개편할까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 계산시 상속세 과세된 기재금액은 원가로 차감함	12
세무정보	-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4 25 3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 이사충실의무 확대가 비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개정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존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회사 및 주주’로 명확하게 확대되었다. 이는 상장 및 비상장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에게 적용된다.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의 영향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비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영자의 의사결정 부담 및 엄격한 충실의무

- 종전에는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주주 전체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런 의무 준수 여부는 소수주주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
- 창업자, 벤처 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비상장법인에서는 신규 투자, 신주발행, 임직원 주식보상, 합병 및 분할 등 여러 의사결정에서 각 주주 집단 간의 이익충돌 가능성이 높기에, 경영진이 의사결정 내역과 ‘공평성’ 입증을 더 엄격하게 준비해야 한다.

### 2. 소수주주 보호 강화 및 분쟁 위험 증가

- 소수주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만한 의사결정(예: 대주주만 유리한 신주배정, 합병비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 특히 스타트업에서 투자 라운드가 반복될 때 기존 투자자(주주)와 신규 투자자, 경영진 간 입장 차로 인한 이해충돌이 표면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 증시된다.

### 3. 상장 추진 시 리스크 관리 필요

- 상장 추진을 계획하는 비상장기업 일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부담이 되어 상장 추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이사의 책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요 경영 결정(신주 발행, 자본거래, 경영권 분쟁 등)에서 소수주주 권익 침해 여부를 세심히 검토해야 하고, 내부 통제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 ● 경영판단의 주요 영향

비상장사의 경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확대는 경영 판단에 다음과 같은 주요 영향을 주고 있다.

- 경영 판단의 신중성과 복잡성 증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비상장 회사 경영진은 의사결정 시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법적 분쟁 리스크 및 책임 강화  
주주 권리 침해 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배임죄 등)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경영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이사회는 경영 판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요구 강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서 절차적 문제 발생 시 법적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의견 수렴, 독립위원회 설치 등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중시된다.
- 경영권과 대주주 영향력 조화 필요성  
비상장사에서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경영상의 신속한 판단 및 대주주 경영권 안정 간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요청된다.
- 비용 부담 증가와 기업 운영 영향  
법적 책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임원책임보험(D&O) 가입 확대, 외부 자문 및 관리체계제 강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준법 경영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와 회사의 평판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비상장사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 보호로 확대되면서, 경영 판단 시 주주 권익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 요구되고 있다. 비상장사 경영진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영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Q** 퇴직한 직원 중 최근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지난 재직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그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회사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 (회사 납입분 및 환급금 이자)를 회사의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회사가 부담한 연금 및 환급금이자 입금된 경우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건물 외벽 장비반입구 설치공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Q** 당사는 건물 외벽에 장비반입구 (스태킹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1차 외벽 기존 판넬 철거(거래처A) → 2차 스태킹도어 설치 (거래처B) → 3차 판넬 마감(거래처A)  
 거래처 A : 4,000,000  
 거래처 B : 6,000,000  
 거래처 C : 300,000(스카이자)  
 총 10,300,000원으로 자산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자산으로 인식하는게 맞을까요?

**A** 건물과는 별개인 "건축물부속설비"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NPL채권 투자 수익의 매출인식 여부

**Q** 당사는 '기타금융업' 으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입니다.NPL 채권에 투자하여 최근 해당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NPL채권은 대부업체가 관리를 대신 하였으며, 당사는 투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의 초과 수익을 당사에서 관리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당사 매출로 인식 하였습니다.

해당 회계 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문의 합니다.

**A**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익(매출)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

##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Q** 안녕하세요

1.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2. 관련 법규나 예규 알려주세요

**A**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Q**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없는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국세청 신고시에 기타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A**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신고)를 남겨두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바, 가급적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증여사실의 입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금융상품 가입 당시 아버지가 2,1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녀의 증여공제액인 2,000만원을 제외한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100 \times 10\% = 10$ 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15년 후에 아들이 7,000만원을 찾아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들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초 저축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7,000만원-5,000만원(증여공제액)=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000만원 $\times$ 10%=2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2,1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금융상품 가입시점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15년 이후의 증가액인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증여시점에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증여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000만원(2,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구분	1997.1.1 이후	1999.1.10 이후	2003.1.10 이후	2008.1.10 이후
합산기간	5년	10년	10년	10년
공제액	5억	5억	3억	6억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보유세 개편 핵심 사항

	현행 문제점	개편 방향	기대 효과
누진구조	과세표준 협소·상위 집중 미 반영	다주택·고가 구간 세율 단계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상한제	고가주택자 혜택 집중	소득·보유수 기준 차등 상한	세부담 형평성 확보
납부이연제	일부 고소득자까지 적용	1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정	고령층·은퇴세대 보호
장기보유공제	과도한 혜택·매물잠김 유발	공제율 대폭 축소·실거주형 개편	시장 순환 촉진·불로소득 억제
정책 일관성	정치적 변동성	1년 예고·5년 로드맵	예측가능성·신뢰 확보

### 화

#### 세제개편 핵심 사항

	현행 문제점	개편 방향	기대 효과
보유세	낮은 실효세율, 누진 약화	누진강화·공시가 현실화	투기 억제·형평성 제고
거래세	과중한 취득세·양도세	단계적 인하·장기보유공제 확대	거래 활성화·이사 유도
공시가격	시세 괴리·불투명 산정	현실화율 85-90%·평가투명성 확보	조세 신뢰 회복
지방재정	취득세 의존 구조	국고보전·공유세제 개편	거래세 완화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 일관성	정권별 진자운동 반복	5년 로드맵·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장 예측가능성 확보



## 한눈에 보는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체계

	매매 차익	분배금
국내 주식형 ETF	과세하지 않음	배당소득세(15.4%)
국내 상장 ETF 일부 (원자재, 해외지수 추종, 레버리지 및 인버스 등)	배당소득세(15.4%)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22%)	



## 연금수령방식의 특징과 활용

연금수령방식	주요 내용	활용 방법
종신연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li> <li>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고, 중도 해지 및 변경 불가</li> </ul>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종신 소득 확보
금액지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해진 주기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수령</li> <li>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기간이 유동적임</li> </ul>	정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기간지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수령 기간과 주기를 사전에 확정함</li> <li>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 금액이 변동됨</li> </ul>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원
연금수령 한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li> <li>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동됨</li> </ul>	절세혜택을 누리며 최대 금액 인출
수시인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 수급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li> <li>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세부담이 늘어남</li> </ul>	다른 소득원이 있을 때 예비자금으로 활용



##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정리의 힘'

### •책상은 사고의 거울입니다

어수선한 책상은 생각도 산만하게 만듭니다. 매일 퇴근 전 5분만 투자해 책상 위를 정리해 보세요. 필요한 자료만 남기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면, 다음 날 업무 몰입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 •파일과 폴더에 '이름 규칙'을 만드십시오

업무 효율의 기본은 자료 접근 속도입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 부서, 프로젝트명을 일정한 형식으로 포함시키면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5-10\_월간보고\_인사팀"과 같은 규칙적인 구조는 협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메일과 메신저도 정리의 대상입니다

메일함을 '읽음/미처리/보관' 세 구역으로 나누거나, 주제별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면 중요한 메일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메시지는 즉시 처리하거나 별표 표시로 분류해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 •디지털 데스크톱을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바탕화면이 가득 찬 아이콘은 집중을 방해합니다. 파일은 주간 단위로 폴더에 정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바로가기로 두세요. 눈에 보이는 정돈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 •업무 프로세스를 시각화하십시오

프로젝트의 흐름을 마인드맵, 칸반보드, 혹은 체크리스트로 시각화하면 진행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을 '보이는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도 우선순위 설정과 일정 조율이 훨씬 쉬워집니다.

### •정리는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정리는 한 번의 대청소가 아니라, 매일의 짧은 루틴입니다. 퇴근 전 5분, 주말 전 15분만 투자하면 업무의 피로도가 줄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여백이 생깁니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 계산시 상속세 과세된 기재금액은 원가로 차감함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사전법규소득-95, 2025.04.21

### 질 의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상속인이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받는 경우
  -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상속재산에 포함된 영업권의 가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 질 의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부속토지 포함)을 신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경로당(부속토지 포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 신축 경로당(부속토지 포함)을 기부한 사업자에게 양여하고자 함

###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

사전법규법인-552, 2024.10.21

**질 의**

- (질의1)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질의2) 질의에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합병교부주식의 시가인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회 신**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법규법인-3158, 2025.04.07

**질 의**

- 최초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최초 사업연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운용소득 사용요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등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가액이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재산 많으면 세금 많이” 정부, 보유세 개편할까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는 원하는 효과는 안 나타나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가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개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께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여서 지자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 원으로 11개 지방 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어서, 2027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에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 목적에 이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구윤철 부총리는 현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뽕뽕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세금 체계도 논의 대상이다. 이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지느니, 핵심 지역에 좋은 주택 1채만 가지자는 현상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예

를 들어 50억 원 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 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 강화를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 'AI 관세행정' 구축... 관세·마약 총력 대응"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 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세계 관세 기구(WCO)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표준 확산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에 최적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OOMS) 보급 확대 및 K-전자 통관 시스템의 국가별·분야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 국세청, 2025. 10

## 1. 법인세

###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 (1 회계기간)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
국가·지자체		•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몰로 종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신설하였습니다.(’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국내에 소재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 적용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인 4.30.(중소기업은 5.31.)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예시)

구분	납부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분납할 수 있는 세액	7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 2.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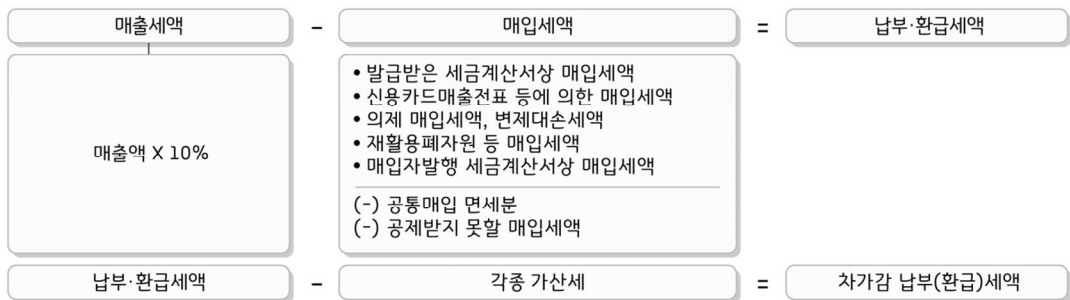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1.1.~6.30.(6개월)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개인사업자
제2기7.1.~12.31.(6개월)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1.1.~1.25.	법인사업자
		7.1.~12.31.		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 3. 종합부동산세

####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택	인별합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9억원) 적용 제외('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 1세대1주택 연령별·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80%)

- 연령별 세액공제 :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 종합부동산세 부과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12. 1.부터 12. 15.까지입니다.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4. 주식등 양도와 세금

#### ●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국내주식등)

구분		과세 대상
상장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으로서</li> <li>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li> <li>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li> </ul>
비상장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장법인의 주식(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li> </ul>
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li> <li>•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li> <li>• 주식워런트증권(ELW)</li> <li>• 국외 장내 파생상품</li> <li>•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li> </ul>
기 타 자 산	특정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li> <li>※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한 경우 포함('9.1.1. 이후)</li> </ul>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li> </ul>
	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li> </ul>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제118조의2)

<p>□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으로 손익통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내 주식과 합산하여 적용('0.1.1.이후 양도분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li> <li>-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위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 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li> </ul>
<p>□ 소득세법 제 118조의2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li> </ul>

○ 세율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5%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5%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 외)'8.1.1.이후 (중소기업) '0.1.1.이후('9.12.31.이전 20%)

○ 대주주 범위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4.1.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7.1.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예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예정신고 면제(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 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부터)

**○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와 같이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2002-두-12458(2003.5.13.)참고)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 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세율('24.1.1.이후)

거래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세율	농어촌특별세 세율	거래되는 주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0.03%	0.15%	
코스닥시장	0.18%		상장주식
코넥스시장	0.1%	-	
K-OTC시장	0.18%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	상장 및 비상장주식

### ○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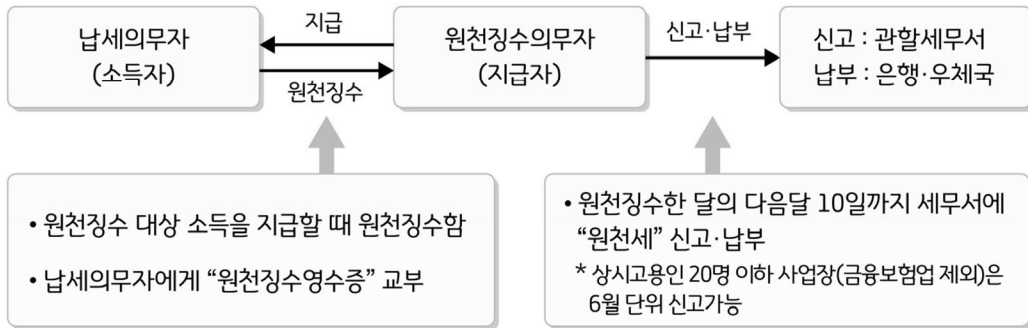
구 분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①	다음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 -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한국예탁결제원	다음달 10일
②	① 외에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다음달 10일
③	①·②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 5. 원천징수하는 세금

###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원천징수 방법

#### ● 근로소득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하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근무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당초 내야할 세금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6.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 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9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개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5백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1천만원
- (대상 확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



액은 제외)

-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및 처분(해외 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

- 국세청, 2025. 10

● 주요세법 해석사례 30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납세의무자	20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46(2023.10.11.)]
위탁업	납세의무자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 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제17653호) 부칙§5에 따라 위탁자를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0922(2023.06.21.)]
공통	과세대상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1226(2023.06.27.)]



공통	과세대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177(2023.09.19.)]
공통	과세대상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638(2024.03.06.)]
공통	과세대상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0497(2023.06.08.)]
공통	과세대상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공통	과세대상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722(2023.08.10.)]
공통	과세대상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185(2024.03.27.)]

공통	과세대상	<p>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p> <p>[사전-2023-법규부가-0278(2023.07.18.)]</p>
공통	과세대상	<p>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p> <p>[기준-2023-법무부가-0059(2023.08.10.)]</p>
공통	과세대상	<p>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p> <p>[사전-2023-법규부가-0456(2023.07.24.)]</p>
공통	과세대상	<p>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p> <p>[서면-2023-법규부가-3299(2024.01.31.)]</p>
공통	과세대상	<p>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임</p> <p>[사전-2023-법규부가-0397(2023.07.18.)]</p>
공통	과세대상	<p>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p> <p>[사전-2023-법규부가-0283(2023.08.25.)]</p>

공통	과세대상	<p>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p> <p>[서면-2022-법규부가-4981(2023.09.26.)]</p>
공통	과세대상	<p>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p> <p>[서면-2023-법규부가-1211(2024.02.26.)]</p>
금융업	과세대상	<p>「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p> <p>[서면-2023-법규부가-2658(2023.09.20.)]</p>
금융업	과세대상	<p>「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p> <p>[서면-2023-법규부가-2659(2023.09.20.)]</p>
사회적협동조합	과세대상	<p>「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p> <p>[사전-2023-법규부가-0258(2023.07.24.)]</p>
임대업	과세대상	<p>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p>

		<p>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76(2023.09.13.)]</p>
학원업	과세대상	<p>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10(2023.08.25.)]</p>
공통	영세율	<p>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68(2023.08.18.)]</p>
공통	영세율	<p>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1649(2023.06.22.)]</p>
공통	공급가액	<p>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417(2023.10.25.)]</p>
공통	공급가액	<p>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p>

		<p>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715(2023.09.07.)]</p>
발전업	공급가액	<p>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353(2023.07.18.)]</p>
항공업	공급가액	<p>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사전-2022-법규부가-0764(2023.07.13.)]</p>
공통	공급시기	<p>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사전-2023-법규부가-0485(2023.08.25.)]</p>
공통	공급시기	<p>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10(2023.10.18.)]</p>
공통	안분계산	<p>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p>

		<p>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4978(2023.07.18.)]</p>
공통	재화의 공급	<p>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549(2023.10.05.)]</p>
공통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p>「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24-법규부가-0064(2024.05.20.)]</p>
공통	현금영수증	<p>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같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법인-0603(2023.09.21.)]</p>
공통	가산세	<p>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3-소득-0281(2023.11.21.)]</p>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국세청, 2025. 10

## 1. 우리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 1.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선 아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기준 : 아래 열거된 업종을 영위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소비성 서비스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2024. 3. 22.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 ③ 2025.2.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

1. 부동산임대업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1월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므로,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2025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업시 판정기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검업시,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다른 업종보다 더 큰 경우에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2) 규모기준 :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규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별표에서 정한 3년 평균매출액 대신 세법에서는 당해연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 분할, 합병 등 사업연도 1년미만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법인이 교육서비스업과 소매업 겸업시, 매출액이 각각 교육서비스업 250억원, 소매업 200억원인 경우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판정하는 방법은?

- 둘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을 모두 합(450억원)하고, 매출액이 더 큰 교육서비스업을 기준으로 규모요건 충족했는지 판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50억원으로 기준 400억원을 초과하므로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독립성 기준 : 독립적인 법인만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거나,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적인 법인으로 보지

없음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은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판단, 30%는 임원지분 제외하고 판단)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외국법인은 해당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을 해당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의 경우,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므로 자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 자산총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의 경우, 주주가 외국법인이므로 자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해당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중요한 지배력(직간접 30%이상&최대출자자) 행사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 상장법인으로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

\* 관계기업 판정시기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소유비율로 판단(서면법규과-1133, 2013.10.18.)

♣ 관계회사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예시

<유형 1>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50%이상)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외감대상 모회사 300억원	50% →	자회사 100억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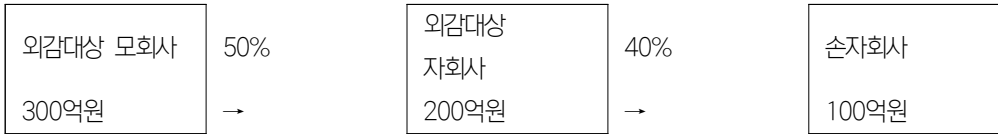
- 모회사 : 400억원 (300억원 + 100억원),
- 자회사 : 400억원 (300억원 + 100억원)

〈유형 2〉 모회사가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50% 미만)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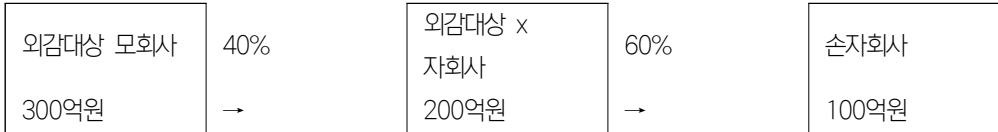
- 모회사 : 330억원 (300억원 + 100억원 × 30%) ,
- 자회사 : 190억원 (100억원 + 300억원 × 30%)

〈유형 3〉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모회사 : 300억원 + 200억원(자회사) + 100억원 × 40% (손자회사)
- 자회사 : 200억원 + 300억원(모회사) + 100억원 × 40% (손자회사)
- 손자회사 : 100억원 + 200억원 × 40%(자회사) + 300억원 × 40% (모회사)

〈유형 4〉 모회사가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 손자회사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모회사 : 300억원 + 200억원 × 40% (자회사) + 100억원 × 24% (손자회사)
- 자회사 : 200억원 + 300억원 × 40% (모회사)
- 손자회사 : 100억원 + 300억원 × 24% (모회사)

**(4) 자산기준 : 자산이 많은 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 못하게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규모기준, 관계기업 기준(위 (3)②), 자산기준을 최초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최초연도와 그 후 3개연도(총 4개연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봄.(2024.11.12.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총 6개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아래 ①과 ②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최다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초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예) 2020년 최초 유예기간 적용법인은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중소기업 여부를 사업연도별로 판단해야 하고,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없음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유예기간내 중소기업 복귀 → 유예기간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 동안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05.03.)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한 업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본적으로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통계청(상담전화 국번없이 110)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열거된 업종 중 일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은 별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업종**

① 제조업

제조업은 직접 제조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업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외주가공방식)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0. 외주가공업체가 국내사업자이어야 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② 건설업

시행사의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아-11700, 02.9.12.)

## ③ 기타(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23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명칭 그대로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정정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742101 측량업, 742102 지도제작업, 742108 제도업, 742113 지질조사, 742201 시험검사분석업, 742202 기술지도사 시험검사분석업, 742203 물질성분 분석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9\*\*’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엔지니어링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⑨)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기술자 포함)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이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사업 관리 등을 말한다.

## ⑤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⑦)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⑥ 자동차정비공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li> <li>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li> <li>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li> <li>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li> </ol>
---

(참고. 이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표기법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의 경우 '1급 자동차정비소', '2급 자동차정비소'로 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 II.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감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1. 소기업 또는 중기업인지, 본점의 위치가 수도권 내인지 또는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 매출액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에 대해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소기업의 규모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2. 음료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창업, 분할, 합병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 유예기간 적용 없이 사업연도별로 소기업 여부 판정하며,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음(서면법인 -5783, 2016.12.9.), 겸업시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 판정

(2) 수도권외의 범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하며, 수도권 소재여부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0159, 2003.01.22)

(3) 감면율

감면율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이외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0%	5%	
	이외업종		15%	

- \* 감면율은 규모, 사업장소재지, 업종에 따라 결정됨
-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 적용
- \*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위 감면율의 50% 적용

(4)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단,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시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한도 계산

**2. 수도권 내·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을 수도권 내·외로 설치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여부 및 감면율을 (원칙)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이지만, (예외)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업자단위 감면방식 적용

**(1)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판정 방법**

수도권 소재여부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 소재 감면율을 적용하고(서이46012-10159, 2003.01.22),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율을 적용(서이46012-10344, 2001.10.12.)

♣ 도소매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0%, 수도권 외 5%)의 이전시 감면율 적용방법

구분 (연도 중에 본점 이전시)		감면율
전	수도권 내	0%
후	수도권 외	5%
전	수도권 외	0%
후	수도권 내	0%

**(2)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방법**

도소매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0%, 수도권 외 5%)이 지점을 새로 설치시 감면율 적용방법

본점 \ 지점	수도권 내		수도권 외	
	본점	지점	본점	지점
수도권 내	0%	0%	0%	0%
	0%	0%	0%	0%
수도권 외	5%	0%	5%	5%
	5%	0%	5%	5%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지점도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도권 감면율 적용하고, 본점이 수도권외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감면율 적용

### Ⅲ. 세액감면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1) 과세관청이 무신고를 사유로 결정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정기신고를 하지 못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 (2)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거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배제)
- (3)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해 감면배제
  -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을 운영하는 법인)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차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아. 소화물 전문 운송업 자. 기타 해상 운송업(낚시어선업으로 한정한다)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p>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측량사업  더.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러. 사진처리업</p>
9. 교육서비스업	<p>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p>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p>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p>

	<p>차. 수의업                  카. 앰블런스 서비스업                  타. 유사 의료업</p>
<p>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p>	<p>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여.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p>
<p>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p>	<p>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p>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안 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아래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아래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제4항·제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62조제4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1항·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제2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제1항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24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세액공제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와 스크램업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제8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가상각 의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비(한도 2,000원)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1,000원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10% 인 경우로 가정하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2,000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은 -1,000원이 되고 산출세액이 없어 적용할 세액감면은 0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한도내 임의 상각하는 방법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여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이고, 세액공제와 달리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 (2)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고,
- (3) 별도의 사후관리(추가감면, 감면분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7일 (금)	10월 20일 (월)	10월 21일 (화)	10월 22일 (수)	10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419.10	1419.50	1420.20	1423.70	1430.10
일 본 엔 (JPY)	944.68	940.66	941.90	937.20	941.20
영 국 파 운 드 (GBP)	1907.48	1905.68	1903.64	1903.42	1910.11
캐 나 다 달 러 (CAD)	1010.25	1013.02	1012.08	1015.48	1022.27
홍 콩 달 러 (HKD)	182.62	182.75	182.81	183.19	184.02
위 안 화 (CNH)	199.06	199.31	199.47	199.91	200.69
유 로 화 (EUR)	1659.92	1654.57	1653.61	1651.56	1660.49
호 주 달 러 (AUD)	920.57	923.10	925.40	924.27	927.92
싱 가 폴 달 러 (SGD)	1097.48	1095.72	1097.78	1096.50	1102.0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35.68	335.90	336.06	336.65	338.09